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91 발의연월일: 2020. 11. 12.

발 의 자:서영교·김홍걸・민홍철

송옥주 • 윤관석 • 윤준병

이규민 • 이원욱 • 임호선

주철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·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.

경마, 경륜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 역시 시·도세로서 그중일부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, 장외발매소가 소재한시·군 및 자치구에서 주거침해, 도박중독, 교육상 문제, 교통혼잡, 주차문제,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므로,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·도에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, 이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·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함으로써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해 주려는 것임(안 제29조 및 제29조의2).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6855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중 "(화력발전·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)"를 "[화력발전·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 및 「경륜·경정법」에따른 장외매장 또는 「한국마사회법」에 따른 장외발매소(이하 "장외발매소등"이라 한다)가 있는 시·군이 장외발매소등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는 제외한다]"로 하고, 같은 조에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레저세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징수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을 장외발매소등이 있는 시·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

제2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보통세"를 "보통세(장외발매소등이 있는 자치구가 장외발매소등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는 제외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징수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을 장외발매소등이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1항·제4항 및 제29조의 2제1항·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·징수한 레저세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6855호 지방재정법 법률 제16855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(시·군 조정교부금) ① 시 제29조(시·군 조정교부금) ① --·도지사(특별시장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(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 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)에 해당하 는 금액을 관할 시 · 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 여야 한다. 1. 시 · 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 세 · 도세(화력발전 · 원자력발 -----[화력발전·원자력발전 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 방분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 방교육세는 제외한다)의 총액 육세 및 「경륜・경정법」에 따른 장외매장 또는 「한국마 사회법」에 따른 장외발매소 (이하 "장외발매소등"이라 한 다)가 있는 시 · 군이 장외발매 소등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

2. (생략) ②·③ (생 략) <신 설>

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 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 는 제외한다]-----

- 2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 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레저세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징수 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 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을 장외발매소등이 있는 시・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

제29조의2(자치구 조정교부금) 특 | 제29조의2(자치구 조정교부금) ①

-----보통세(장외발 매소등이 있는 자치구가 장외발 매소등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는 제외한다)-----

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 1항에 따른 레저세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 징수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

을 장외발매소등이 있는 자치 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